

충남대학교 양자제어물성연구소 운영 시행 세칙

전문개정 2013.1.24.

개 정 2020.1. 9.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“충남대학교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” 제21조(시행세칙)에 따라 충남대학교 부설 양자제어물성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무소 및 연구시설)

- ① 연구소는 충남대학교 내에 둔다.
- ② 연구소 업무 공간은 기초 1호관 또는 2호관에 둔다.
- ③ 연구시설은 소자공정실험실, 물성분석실험실 등 물리학과 연구시설을 사용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물리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
2. 물리학 과학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연구 및 행정지원
3. 학술정보교환 및 교류 사업
4. 기타 필요한 연구소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

제4조 (임원 및 직무) 연구소에는 소장 및 간사 1명을 두며 필요시 부소장을 둘 수 있다.

-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② 부소장은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
제5조 (소장 등의 임명)

- ① 소장은 부교수 이상 책임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연구소의 부소장과 간사는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소장 임명은 “충남대학교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”을 따른다
-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

-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 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심의
 3. 연구소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
 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사항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국내·외 해당 학문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충남대학교 지원금, 간접연구비, 각종 보조금, 찬조금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년도)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(29일)로 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 이전에 임명된 자는 이 시행 세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칙(2013.01.24.)

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01.09.)

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